

의안번호	제 65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3월 3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650 호

제출연월일 : 2021년 3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은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세계적 관심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K-뷰티를 전파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교육원) 건립은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등의 시설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근·현대 행정수반의 삶과 업적,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련기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 건립부지 매각은 충북 오송을 'K-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중부권역 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를 유치, 건립토록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임
- 공유재산(도→괴산군) 매각은 괴산군에서 자원순환센터의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도유지 매각을 요청한 건으로 괴산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처분하고자 하는 것임
- 공유재산(도→단양군) 매각은 단양군에서 폭설, 한파, 도로 결빙 등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도유지 매각을 요청한 건으로 단양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처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주전시관 내)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업비 : 240억원(국비 144, 지방비 96)
- 규모 : 건축 8,900㎡(지하1층, 지상 5층)
※ 부지(3,300㎡)는 충청도와 청주시에서 5:5비율로 既취득
- 주요시설 :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 전문 실습실, 회의실, 기숙사, 홍보체험관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교육원)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19-1번지 외 10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업비 : 180억원(국비 72억원, 지방비 108억원)
- 신축규모 : 6,100㎡(부지 15,000㎡) 지상4층
- 주요시설 : 나라사랑 리더십 체험장, 연수시설, 생활관 등

□ 재산의 처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 건립부지 매각》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41번지
- 매각규모 : 부지 13,061.5㎡
- 매각시기 : 2021년 상반기
- 재산가액 : 26억원(199,520원/㎡, '21.6.30기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적용
- 매수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공유재산(도→괴산군) 매각》

-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761-54번지 외 2필지
- 매각규모 : 6,303m²
- 매각시기 : 2021년 상반기
- 재산가액 : 2.9억원 정도
- 매 수 자 : 괴산군

《공유재산(도→단양군) 매각》

- 위 치 :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24-2번지
- 매각규모 : 5,779m²
- 매각시기 : 2021년 상반기
- 추정가액 : 1억원 정도
- 매 수 자 : 단양군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2건	15,000	42,0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청주전시관 부지 내)	8,900	24,000,000	2023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19-1번지 외 10필지	6,100	18,000,000	2023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교육원) 건립		신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2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4)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3건	25,143.5	3,003,794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41	13,061.5	2,606,068	2021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화장품· 바이오연구소 건립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매각
	건물							
	기타							
2	토지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761-54	1,934	116,040	2021	괴산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괴산군	매각
	토지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761-48	3,498	129,426	2021	괴산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괴산군	매각
	토지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7-2	871	52,260	2021	괴산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괴산군	매각
	건물							
	기타							
3	토지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24-2	5,779	100,000	2021	단양 제설전진기지 구축	단양군	매각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